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기술(솔루션)

















Contents

- 1.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필요성
- 2. 웹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법
- 3. 개인정보 관리 수준진단을 위한 개인정보접속기록 수집 방안
- 4.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을 위한 가명 ㆍ 익명 처리방법

Chapter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필요성



1-01,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필요성(개인정보 필요성 및 보호법 강화)

20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개정 시항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일원화 하고, 가명정보 도입 등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 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 입니다.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가명정보 도입 등 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 양립성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범위 확대
- 가명정보의 이용·제공 범위 확대
- 익명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
-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 근거 마련 (제15조3항, 제17조4항)
- 데이터 결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28조의3)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감독기구 및 관련법령 정비

✓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위원회 통합, 이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 <mark>개인정보보호위원회</mark>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 행정기관으로 격상
- 정보통신망법과의 통합을 통한 법령 일원화

개인정보처리자 **책임성 강화**

•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안전조치 의무 부과

- 추가정보 별도 분리·보관 관리 (법 제28조의4), (영 제29조의5제1항)
- 가명정보 처리시 금지의무 등 (법 제28조의5), (영 제29조의5제2항)



1-02,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필요성(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인정보유출사건이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사회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수립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유출사건사례

- •웹 사이트 운영자 또는 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 웹사이트 관리자가 공지사항이나 정보공개 등의 게시물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
- 사용자가 민원이나 서비스 문의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개인정보 유출한 사건
- 외부로부터 해킹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
 - -악의적 목적으로 홈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
- 내부자에 의한 고의 개인 정보 유출
 - 협력업체 직원이 USB를 통해 임직원 개인정보 수천만 건을 유출해 대출업자에게 판매한 사건
 - 퇴사한 직원이 악의를 품고 고객 데이터를 몰래 가져가 경쟁사로 이직한 사건
 - 불법적인 흥신소에서 받은 주민번호와 이름을 고객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더 많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유출한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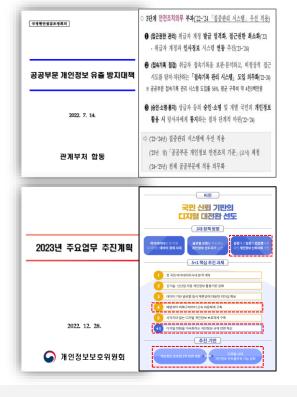
e-나라지표	20: 05		20 06		202 07		200 08		200 09		200 10		200 11	-	202 125		20 01		202 02	
(국정모니터링시스템)	상담	신고	상담	신고	상담	신고	상담	신고	상담	신고	상담	신고	상담	신고	상담	신고	상담	신고	상담	신고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	586	20	508	13	496	-11	434	26	493	30	420	6	479	15	406	16	424	7	522	6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미용 또는 제공	553	6	557	5	652	7	611	5	524	35	506	9	542	8	495	11	473	1	571	1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76	9	91	6	86	6	177	8	85	9	78	6	82	4	100	9	74	7	90	5
고유식별번호 처리제한 등	66	1	63	2	53	0	67	4	73	3	54	2	68	4	58	4	71	3	59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502	41	524	34	551	43	430	39	496	48	495	33	566	47	815	31	819	14	781	43
가명정보 처리 제한	17	0	5	1	5	0	7	0	7	0	3	0	9	0	2	0	4	-	12	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미비	279	7	264	16	349	10	373	13	287	14	292	3	348	22	327	30	497	26	394	23
열람 정정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미비	177	18	166	-11	219	14	173	12	118	9	897	7	140	10	202	23	210	11	192	15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	7, 322	0	5,238	0	6,556	0	6,853	0	7,356	0	7,149	0	7,867	0	5,868	0	4,100	-	6,163	0
타인 정보의 도용 등 침해	1,293	0	1,200	0	1,257	0	1,334	0	1,394	0	1,402	107	1,476	156	1,388	153	1,432	-	1,558	0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질의 등 기타	6,775	120	974	20	695	6	732	4	814	73	815	24	1,008	0	949	0	853	-	922	0
합계	17,646	222	9,590	108	10,919	97	11,191	111	11,647	221	12,111	197	12,585	266	10,610	277	8,957	69	11,264	94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자료



1-03,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필요성(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3년 주용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신뢰 기반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 전면 혁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보위 '23년 업무 추진 목표: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

- 공공부문의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 강화 필요**★수워시 사건(공무원의 흥신소 정보유출), 신당역사건(공기업 직원의 내부 인트라넷 정보열람) 등
-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대량의데이터 처리가 증가하면서, 공공 민간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 및 2차 피해 발생 지속 *유출신고 개인정보(해킹): '19년 1,404만(1,308만)→'20년 1,200만(1,143만)→'21년 991만(814만)
- ⇒디지털시대에 맞는신뢰기반의개인정보보호 활용체계구축필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 [4]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신속 대응체계 구축
 - □투명하고 안전한 공공부문 개인정보관리 장착
 - 1. 민감한국민개인정보를대량처리하는 1,515개 시스템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

접속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및 접근 통제 강화

- *('23년) 주민등록 연계시스템 등 60개 → ('24년) 지자체 표준시스템 등 50개 순차점검 - 개인정보 고의 유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따면·해임) 등 처벌 강화(1월~)
- 2. 행정·사법분야 법령* 전면 정비로 개인정보 과다수집 원천차단 (~12월)
- *선거·정당 200개, 법원, 법무, 민사법, 형사법 577개 등 14개 분야 1.670개 법령
- 3. 공공기관관리수준진단을 전면 혁신하고 '보호수준평가제' 도입('24년)
 - *기관별자체진단 및 정성평가 도입, 현장검증확대(^{22년}60건 → ^{23년}90건) 등평가내실화
 - *조달실적기반공공기관56.3%, 지자체 26.3% 시스템 미도입



1-04,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필요성(개인정보보호 강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데이터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2023 개인정보 7대 이슈'를 선정하였으며, 가명정보 활용 도전 과제 및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조치 대폭 강화를 예고 하였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방안』

- (처벌·단속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고 부정이용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공분이에서 개인정보고의 유출에 대한 징계 및 형사처벌 강화
 - *한번이라도고의유출,부정이용시공직에서퇴출하는제도로중대한시생활침해,각종범죄악용등 비위정도가심각한경우1회개인정보유출,부정이용에도파면·해임
- (보호·관리강화) 공공분야집중관리시스템을 지정하여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점검, 승인 소명 통지절차를 마련하는 등
 <u>안전조치기준을 강화</u>, 영향평가의실효성확보및시스템감리시개인정보보호점검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내실화
- (사각지대소멸) 공공시스템별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고시스템이용기관, 개인정보관리취약지지체의책임을강회하여개인정보처리의 책임및역할 명화화, 공공기관개인정보관리수준진단을내실회하고 정부평기에수준진단결과를반영해수준진단의실효성확보
- (보호기반구축) 적정인력배치 및시스템확충을통해<mark>개인정보보호체계를 강화</mark>하고조사 평가 진단등개인정보위의공공부문대응 기능을확대해개인정보보호기반을구축,<u>A1개인정보침해예방시스템도입으로공공부문개인정보과다수집원천차단</u>
- ■(법제도강화) 상기공공부문개인정보유출방지대책시행을위해 주요공공기관에대한안전조치특례규정을신설하는등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개정검토등
 6
 EASYCERTI(季)의지서티

Chapter



웹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법



2-01, 웹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필요성

컴플라이언스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2017.10.19)제31조
- 안정성확보조치기준고시제5조4항 "개인정보처리자는취급중인 개인정보가인터넷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무선망이용등을 통하여열람권한이없는 자에게공개되거나유출되지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컴퓨터 및 모바일기기등에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의제20조

행정·공공기관 Cloud 전환 정책



- 2021년부터진행된"행정·공공기관클라우드전환"정책으로
 2025년도까지행정·공공기관에서운영중인모든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전면전환·통합계획
- 대대적인시스템개편사업으로클라우드이전시새로운보안 S/W가필요함에따라,클라우드에적용이가능하며호환성이입 증된개인정보필터링S/W필요

이미지 파일 개인정보 보안 강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홈페이지개인정보노출방지안내서)'에서 이미지에대한개인정보유출사례분석을통해이미지속개인정보를 차단해야한다고명시
- 2023년도현재개인정보유·노출사고빈도가많아져,개인정보보호 인식높아짐에따라취약사각지대(이미지파일내의개인정보)보안 필요



2-02, 웹 개인정보 보호 기대효과

최근 웹 개인정보보호기술은 다양한환경에 적용이 가능하며, 적용 후 개인정보유 · 노출에 대한 보안이 보장 됩니다. 이렇게 웹 개인정보보호는(공공)기관 및 지자체 의 개인정보보안을 강화함으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노출에 대한 안전한 Web환경 조성

웹시스템개인정보유·노출에대한기술적,관리적 1차보안기반 확보〈컴플라이언스준수〉

개인정보의 보안성 강화로 기관 이미지 상승

개인정보유·노출에대한사용자가기관에대한이미지신뢰도 상승효과

개인정보담당자의 관리적 편의성 강화

홈페이지 및 대상시스템 개인정보유·노출에 대한 자동탐지 및 차단으로 담당자의 업무효율성 강화

개인정보의 보안성을 강화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가능





2-03. 웹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법(웹 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개인정보 유노출 차단 솔루션 (개인정보 필터링) 목적

- 주로대국민게시판(홈페이지)에업로드되는웹컨텐츠,첨부파일내의개인정보검출시치단을목적으로함
- 일반HTTP뿐만아닌HTTPS통신내에개인정보검출가능

기대효과

- 웹시스템개인정보유·노출에대한기술적관리적1차보안이가능(차단)
- 웹시스템에업로드되는개인정보에대한자동탐지및차단으로해당담당자의업무효율성강화

개인정보 노출 점검 솔루션 (WEB) 목적

- 주로대국민시스템(홈페이지)게시판에이미올려져있는컨텐츠등에인가되지않은개인정보가 기재되었는지검색(SCAN)을목적으로함
- 개인정보필터링솔루션에서오탐및미탐시업로드되는개인정보에대한2차적보안기능
- 기대효과
- 웹시스템개인정보유·노출에대한기술적관리적2차보안이가능

개인정보 노출 점검 솔루션 (파일 서버, DB) 목적

기대효과

- 다양한서버(리눅스, 윈도우, 유닉스등파일서버내에산재한개인정보패턴을 검색(SCAN)하여 개인정보현황을파익하기위한솔루션
- 서버내에방치된개인정보를파악후불필요한개인정보를삭제하기위한현황파악에적합
- 시스템서비스후파일서버, DB서버내에불필요하게쌓여있던개인정보에대한관리가가능해지며, 해당담당자의업무효율및성과향상



Chapter



개인정보 관리 수준진단을 위한 개인정보접속기록 수집 방안



3-01,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련 수준진단 지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지표의 필수 요건을 충족하여 고득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솔루션 구축을 통해 관리 효율성 극대화 방법이 최선 입니다.

지표번호	지표 키워드	진단단위	대응 솔루션
공통-36	접속기록의 보관관리	시스템	개인정보접속기록 솔루셔
공통-37	접속기록의 필수사항 기록	시스템	개인정보접속기록 솔루션
공통-38	접속기록의 필수사항 기록	시스템	개인정보접속기록 솔루션
공통-39	접속기록의 정기적 점검	시스템	개인정보접속기록 솔루션
공통-40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	시스템	개인정보접속기록 솔루션
공통-48	개인정보의 분리 저장 및 보관	시스템	개인정보접속기록 솔루션
공통-59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접근권한 관리	기관	개인정보 가명 익명 솔루션
공통-60	가명정보 처리 내용의 관리와 필수사항의 기록 보관	기관	개인정보 가명 익명 솔루션
혁신-1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	4점	PC / 웹 / 접속기록 / 가명익명 등 전반적인 보호조치를 위한 관리적 / 기술적 / 물리적 보안

3-02, 접속기록 수집 항목

접속기록에 기록하여야 하는 항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_해설서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여야 한다.
 - 계정: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ID 등 계정 정보
 - 접속일시: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접속지 정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컴퓨터 또는 서버의 IP 주소 등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식별정보 (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수행업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
 - ※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등이 수행 업무에 해당될 수 있다.
 - ※ 기록하는 정보주체 정보의 경우 민감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03. 접속기록 수집 항목(정보주체정보)

접속기록에 기록하여야 하는 항목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처리한정보주체정보:개인정보취급자가누구의개인정보를처리하였는지를알수있는식별정보 (ID,고객번호,학번,사번등)

※기록하는정보주체정보의경우민감하거나과도한개인정보가저장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 접속기록 항목 예시 ■■■

- · 계정 : A0001(개인정보취급자 계정)
- · 접속일시 : 2019-02-25, 17:00:00
- · 접속지 정보 : 192.168.100.1(접속한 자의 IP주소)
-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CLI060719(정보주체를 특정하여 처리한 경우 정보주체의 식별정보)
- ・ 수행업무: 회원목록 조회, 수정, 삭제, 다운로드 등
 - ※ 위 정보는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환경에 따라 책임추적성 확보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로 기록해야 한다.



3-04. 접속기록 수집 예시

접속기록에 기록하여야 하는 항목

2019년 개인정보보호 8차 전문교육(9.23(월))

* 접속기록 필수 항목 남기기

[접속기록 필수항목]

- 계정: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는 ID 등 계정 정보
- 접속일시 : 접속한 시점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점(년-월-일, 시:분:초)
- 접속지 정보: 접속한 자의 PC, 모바일기기 정보, 서버의 IP주소 등 접속 주소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했는지 알수 있는 (이름, ID 등)
- **수행업무**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

※ 접속기록 예시

번호	접속일	접속시간	계정(id)	접속지정보(IP)	수행업무(이벤트)	정보주체 정보
1	2019-07-06	10:15:10	gdhong01	192.168.4.123	고객정보 조회	882428-222222
2	2019-07-06	10:16:05	gjlim02	192.168.4.17	고객정보 수정	971325-1111111
3	2019-07-06	11:10:47	jskim01	192.168.4.34	직원 조회	844505-1111111

3-05, 다운로드 접속기록 및 사유

개인정보 다운로드의 기록관리 및 사유 확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_해설서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특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출을 목적으로 다운로드 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취급자가 다운로드 한 개인정보를 회수하여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06, 다운로드 접속기록 및 사유 조건

개인정보 다운로드의 기록관리 및 사유 확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_해설서

- ■■■ 다운로드 사유확인이 필요한 기준 책정 예시 ■■■
- · (다운로드 정보주체의 수) 통상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건수가 일평균 20건 미만인 소규모 기업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경우 사유 확인
- · (일정기간 내 다운로드 횟수) 개인정보취급자가 1시간 내 다운로드한 횟수가 20건 이상일 경우 단시간에 수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행위에 대한 사유 확인
- · (업무시간 외 다운로드 수행) 새벽시간, 휴무일 등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경우 시유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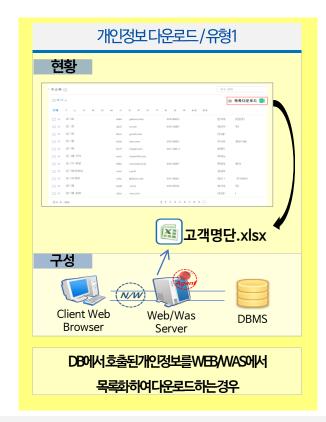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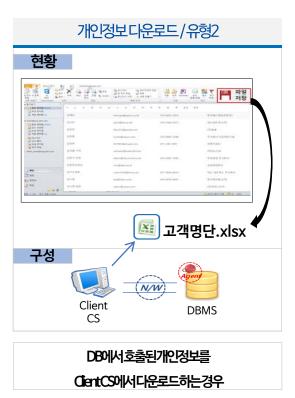
· 다운로드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개인정보를 엑셀, 워드, 텍스트, 이미지 등의 파일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3-07,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다운로드 유형

다운로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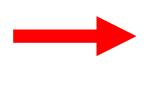


3-08, 다운로드 접속기록 및 사유 수집 방법

다운로드 개인정보 접속기록 수집 및 사유 수집 방법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자체 개발	1.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내에서 자체 개발로 다운로드 이력 로그 및 사유 수집 가능 (수집된 로그는 접속기록 솔루션과 연계 후 솔루션에서 통합 관리)2. 다운로드가 발생하는 모든 페이지에 다운로드에 대한 사유 받을 수 있음				
개인정보 접속기록 솔루션에서 수집	1. 모든 다운로드에 대한 사유 페이지(팝업창)출력으로 다운로드 사유 수집 가능 2. 비정상위험 시나리오를 통한 오남용 분석 가능 3. 대상시스템 간단한 소스 수정으로 다운로드 이력 수집 및 사유 수집 가능 4. 접속기록 솔루션에서 통합 적인 관리 가능(비정상위험 분석 편의성 UP)				

❖사유페이지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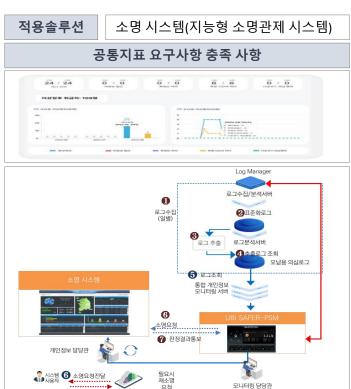




3-09, 비정상위험 분석 및 소명

개인정보 접속기록 수집 외에 기관 내부관리 규정에 정의된 비정상위험 분석 필요하며, 비정상행위 의심 로그는 해당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소명을 받아야 합니다

지표번호	공통-38
지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월1회 이상 점검하고 있는가?
근거법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2항
평가기준 (착안 사항)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또한, 접속기록 점검 시 다음과 같은 '비정상 행위' 를 발견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 소명요청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해야 함
비정상 행위	 (계정) 접근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계정으로 접속한 행위 등 (접속일시) 출근시간 전, 퇴근시간 후, 새벽시간, 휴무일 등 업무시간 외 접속한 행위 (접속지 정보) 인가되지 않은 단말기 또는 지역(IP)에서 접속한 행위 등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특정 정보주체에 대해 과도하게 조회, 다운로드 등의 행위 (수행업무) 대량의 개인정보에 대한 조회, 정정, 다운로드, 삭제 등의 행위 등 (기타) 짧은 시간에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지역(IP)에서 접속한 행위 등



Chapter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을 위한 가명 · 익명 처리방법



4-01.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법률 개정

데이터 3법

개정전-〉개인정보이용시**사전에동의**필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모든시항에서 개인정보이용

- ·**기명정보상업적** 목적활용기능
- ·개인정보관리감독기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원화**

개인성모이용 ·기명정보상업적

정보수집이용 ·온라인상개인정보 규제·감독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변경

온라인상의개인정보

·융합산업활성화위해개인

정보통신망법

신용거래에서의 개인정보

신용정보법

- ·기명정보금융분이빅 데이터분석·이용 ·기명정보정보주체동
 - 의없이이용및 제공가능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3조 공공기관이보유 · 관리하는정보는국민의알 권리보장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적극적으로공개하여야한다.

데이터 산업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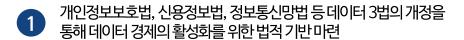
데이터산업진흥및이용촉진에관한기본법

제 1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간의결합을통해새로운데이터의생산을촉진하기 하여산업간의교류및다른분야와의융합기반구축등에 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추진하여야한다.

제 1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데이터에대한객관적인 기치평기를촉진하기위하여데이터기치의평가기법및 평가체계를수립하여이를공표할수있다.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등의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안 솔루션의 중요성이 증대



4-02,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가명처리 필요성

안전한데이터처리환경조성

사용 목적에 맞도록 데이터의 효용성을 유지하면서 개인의 재식별 위험을 제거하여 최적의 가명 처리 방안을 확립〈컴플라이언스 준수〉

결합데이터활용

내부결합 / 외부결합 등데이터 결합을 통하여 기존 정보를 벗어난 새로운 정보창출로 인사이트 창출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

개인정보관리 수준진단의 평가요소로서 정보관리 가점추가로 수준상향평가 가능성을 높임

정보공개요구대응

연구, 유통, 정보공개 등 다양한 정보공개 요구에 적법한 대응방안 (가명화, 익명화, 각종 이력관리)

내부데이터활용및결합

정책수립, 사업전략수립 등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데이터로 각종 정책, 기획 등에 활용 가능

데이터산업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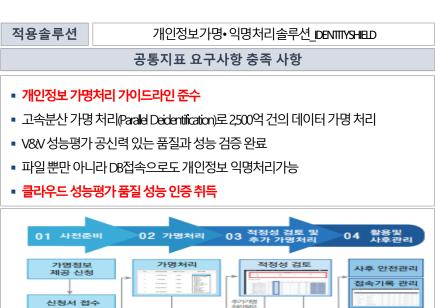
가명정보형태의 빅데이터 활용·제공도가능하며, 다른산업과가명정보 빅데이터 결합 활용가능



4-03, 개인정보 관리 수준진단 평가 지표 준수

개인정보기명 • 익명처리솔루션은기명정보와추가정보를분리보관하고 있으며,추가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지표번호	공통-59		단위	시스템
지표	I : : : : : :	정보를분리보관(추기정보 정보에대한개인정보취급기		T . ' ' ' ". ' ' /
근거법령	:	보호법」제28조의4제1항 보호법시행령」제29의52		
평가기준 (착안사항)	그추기정보 • 또한,추기정	추기정보를분리보관하거니 를즉시파가하아함 보를분리보관하는경우추 업무에필요한최소한의인원	기정보에대한개인경	성보취급자의
참고사항	추기정보의 *개인정보의 추기정보가 • '추기정보'라 방식(알고라 개인정보를 보등)를말한 • 기명정보와	난? 개인정보를기명처리 함 사용·결합없이는특정개인 비일부를삭제하거나일부또 없이는특정개인을일이볼~ 한? 개인정보의전부또는일 남즘등),기명정보와의비교· 복원할수있는정보(매핑테 발다. 추기정보의물리적분리기연 도기능해나,이경우보다엄	을일이볼수없는정 는전부를대체하는! 수없도록차리하는? 부를대체하는데이용 대조등을통해삭제! 이블정보,기명차리 바라운경우에는DBB	보를말한다. 등의방법으로 선 용된수단이나 또는대체된 에사용된개인정



추가 가명처리

> 가명정보 제공 가명처리 대장

기명정보 제공신청 적합성 검토

제공

결정

가명처리 완료

제공

4-03, 개인정보 관리 수준진단 평가 지표 준수

개인정보기명 • 익명처리솔루션은기명정보처리에대한내용관리를위해필수시항을기록보관합니다.

지표번호	공통-60	단위	시스템
지표	가명정보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 목적 등 필수사항을 기록·보관하고		4
근거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제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의	_	
평가기준 (착안사항)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상세내역 필수사항을 기록·보관 해야 함 가명정보처리의 목적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제3자 제공시 제공받는 자	ᅾ 관리를 위해 디	음의
	予 提	내용	







개인정보 가명 • 익명 처리 솔루션_IDENTITY SHIELD

공통지표 요구사항 충족 사항

- 이지서티의 IDENTITY SHIELD 가명처리는
- ①가명처리에 필요한 사전준비
- ②위험성을 검토하여 가명처리 수행
- ③사전준비와 가명처리 결과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추가처리
- ④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사후관리단계로 이루어집니다.





4-04, 정보공개 예시



데이터3법으로 나날이 늘어나는 연구, 유통, 정보공개 요구에 적법한 대응가능

수집, 가명처리, 적정성검토, 사후관리 등 관련업무 전반 자동화처리로 적법하고 원활한 업무가능

4-05. 내부데이터 결합 예시







새로운 결합정보

가구별, 소득별, 주거정보 등

1인가구, 소득별 주거지 분석 등 내부데이터를 활용한 자료 생성 가능

세대별, 소득별 거주지 위주의 타겟 정책설정 가능

4-06, 외부데이터 결합 예시



신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정책 반영

4-07, 이지서티 솔루션(개인정보 필터링)

개인정보필터링솔루션(U-PRIVACY SAFER)은개인정보실시간탐지 및치단수행, 첨부파일 필터링, 개인정보유출치단등을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수행합니다.





4-08, 이지서티 솔루션(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솔루션)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솔루션(UBISAFER-PSM)은개인정보생명주기(수집,저장,이용,제공,파기)에따라개인정보의체계적관리기능을 제공하는솔루션입니다.







4-09, 이지서티 솔루션(지능형 개인정보 가명 익명처리 솔루션)

개인정보기명·익명처리솔루션(IDENTITY SHIELD)은개인정보보호 및컴플라이언스준수를 위하여개인정보데이터 활용에 대한 필수적인 가명처리기능을 제공합니다.



